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5

발의연월일: 2022. 9. 19.

발 의 자: 박재호·김병기·김정호

노웅래 • 민병덕 • 서동용

윤관석 • 이병훈 • 이상헌

이용우ㆍ최인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공익성 및 신용질서 보호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하여 금융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정 기간마다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이 여전히 투명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법률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 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

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 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제32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
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	사위원의 선임 등) ①
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	
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	<u>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u>
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1명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어야 한다.	<u>선임한다.</u>
<u><신 설></u>	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
	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
	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
	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u>라</u>
<u> <신 설></u>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
	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

<신 설>

<신 설>

<신 설>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 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② ~ ⑩ (생 략)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 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 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 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 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 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 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 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 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 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 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

을 가진 사람

② ~ ⑩ (현행과 같음) 에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
①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조세범</u>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